

의안번호	2205400
의 퇴 인	백승아 의원
회 답 일	2024.11.28.
추계번호	24C4985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3항 (교직원의 구분)	(제3항)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·감독기관 ¹⁾ 이 정하며,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 (학교시설 등의 이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지도·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내용임
- 현행법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
 - － 이에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에서는 유치원의 교원·수석교사·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²⁾

1) 제18조(지도·감독)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, 공립·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.

2) 제23조(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)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·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. 다만,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제23조의2(수석교사의 배치기준)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,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제24조(직원의 배치기준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,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. (이하 생략)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등이 정할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감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이 곤란³⁾

- 교육통계⁴⁾에 따른 유치원 교원은 55,637명이며, 이 중 국립유치원 소속 교원은 38명, 공립유치원 소속 교원은 23,937명임

[표]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

구분	원장	원감	수석 교사	보직 교사	교사	특수 교사	보건 교사	영양 교사	기간제 교사	합계
국립	3	3	-	7	9	3	-	-	13	38
공립	567	992	19	2,681	10,893	1,158	45	82	7,500	23,937
사립	3,054	1,106	-	250	27,021	1	1	92	137	31,662
합계	3,624	2,101	19	2,938	37,923	1,162	46	174	7,650	55,637

자료: 2023교육통계(2023.12. 교육부)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던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을 교육감 등이 정하게 되어 현행과 비교시 직위별 유치원 교원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교육감 등이 규정할 교직원의 배치기준이 현행과 달리 규정될지 여부 및 직위별 교원의 증감 여부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, 추가 재정수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은 ‘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가 있음’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으며,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해당 교육청 관할 구역의 ‘인구구조 변화,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 등’에 맞춰 제정될 것이므로 이를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함
- 이에 동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제25조(특수학교의 교직원)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3) 안 제20조제3항 후단의 교육부장관의 교원 정원에 대한 국회 보고의 경우, 보고에 따른 수용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,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가능할 것으로 보임

4) 2023 교육통계연보(2023.12. 교육부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